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9. 16(금) 09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
구성 및 운영 조례안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15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, 운영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제안이유

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,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(안 제4조)
- 다. 의원연구단체의 심의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의원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8조)
- 마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(안 제10조)
- 바.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
- 2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, 정책 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의원연구단체의 구성, 등록,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,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, 의원연구단체 지원, 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효율적으로 정비된 조례안으로 보여짐.
- 의원연구단체의 구성(안 제3조)
 -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하였으며, 연구단체의 원활한 추진 및 우리구의회와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방법 규정(안 제4조, 안 제10조)
 -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함께

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통보하여야 함.

- 또한, 안 제10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연구 및 결과 보고서 미제출을 방지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연구단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(안 제5조~안 제7조)

-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, 운영, 기능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

○ 연구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8조)

-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% 범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,000만원 이내로 제한함.

○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(안 제11조)

-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,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당해연도에 연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함.

○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관리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-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충실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-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붙임 1. 서울시 자치구별 의원 연구단체 현황 1부
2.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서울시 자치구별 의원 연구단체 현황

- 조례(18개 자치구)

연번	자치구 (제정일)	인원	심의 위원회	중복 가입	연구단체 존속기간	연구단체 활동기간	연구활동비
1	강동구 (2022.1)	3명 이상	운영 위원회	-	연구활동 종료시 의원 임기 만료시	해당연도 1.1. ~ 12.15.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2	송파구 (2020.3)	5명 이상	”	1개	회계연도 종료일 임기만료 해 5.31.	회계연도 종료일 임기만료 해 5.31.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3	영등포 (2021.3)	5명 이상	”	2개	회계연도 종료일 임기만료 해 만료일	매년 11월 말 선거 해 5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10%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4	서초구 (2022.3)	3명 이상	”	2개	1년 이내	-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5	은평구 (2020.12)	5명 이상	”	2개	연구활동 종료시 의원 임기 만료시	매년 11월 말 선거 해 5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6	양천구 (2021.12)	5명 이상	”	2개	연구활동 종료일 임기만료 해 만료일	-	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7	강서구 (2020.6)	5명 이상	”	3개	연구활동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	매년 11월 말 선거 해 5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10%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8	관악구 (2020.12)	5명 이상	”	2개	-	같은 해 12.20. 임기만료 해 5.30.	의정운영공통경비 20% 연간 9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9	노원구 (2021.5)	3명 이상	”	1개	연구결과 종료 시 의원 임기만료 시	매년 10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 연간 2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10	동작구 (2020.2)	3명 이상	”	3개	연구활동 종료시	-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11	서대문 (2019.4)	3명 이상	심의 위원회	3개	연구활동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	매년 12.31.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12	성동구 (2021.5)	5명 이상	심의 위원회	1개	-	연구활동 종료 시 11.30.	의정운영공통경비 10%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13	성북구 (2019.3)	5명 이상	운영 위원회	2개	연구결과 종료 시 의원 임기만료 시	매년 10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10%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14	구로구 (2011.4)	6명 이상	”	2개	연구결과 종료 시 의원 임기만료 시	매년 11월 말 선거 해 5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5%
15	강남구 (2020.10)	3명 이상	”	2개	연구활동 종료 시 의원 임기만료 시	-	-
16	용산구 (2020.5)	5명 이상	”	1개	회계연도 종료일 임기만료 해 만료일	매년 12.31. 임기만료 해 5.31.	의정운영공통경비 5%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17	종로구 (2020.2)	3~10 명	”	1개	연구활동 종료 시 지선 전 해 12.31.	매년 11월 말	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18	광진구 (2019.12)	4명 이상	”	2개	연구활동 종료 시 의원 임기만료 시	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
- 규칙(4개 자치구)

연번	자치구 (제정일)	인원	심의 위원회	중복 가입	연구단체 존속기간	연구단체 활동기간	연구활동비
1	강북구 (2022.2)	2~ 10명	운영 위원회	-	-	-	의정운영공통경비 5%
2	도봉구 (2015.9)	5명 이상	”	2개	1회계년도	1회계연도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3	종로구 (2012.12)	3명 이상	”	2개	의원 임기만료 시	-	예산 범위 내 지원
4	동대문 (2014.12)	5명 이상	”	1개	-	1회계연도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
- 규정(2개 자치구)

연번	자치구 (제정일)	인원	심의 위원회	중복 가입	연구단체 존속기간	연구단체 활동기간	연구활동비
1	중 구 (2021.6)	4명 이상	운영 위원회	-	연구활동 종료시 의원 임기 만료시	1년 이내	의정운영공통경비 10%
2	마포구 (2019.7)	3명 이상	”	-	-	-	예산의 범위 내 연간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

※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제4조(기준경비)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·의정운영공통경비·의회운영업무추진비·의회역량개발비(민간위탁)·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.

<별표1> 지방의회 관련 경비

5. 의원정책개발비

① 경비성격 :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

-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, 공청회나 세미나,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

※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

(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)

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

* 별도한도 추가 : (지방의원수×500만원)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
-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14조(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)

-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,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,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